

은퇴결정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 연구¹⁾

홍백의*,신유미**,공주영**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을 살펴보고 은퇴정책 수립에 있어 가구 단위 접근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6차 한국노동패널자료(2003년 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시장요인, 가족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본인의 노동시장요인인 종사상지위와 월평균임금이 은퇴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및 월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인의 은퇴결정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등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만이 본인의 은퇴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인구비율은 10.3%로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로 10년도 채 되지 않아 그 비율이 3%이상 상승한 것으로 한국의 고령화가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선진국들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거의 1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20년 내외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장지연, 호정화, 2002)되어, 사회전반에서는 이러한 압축적 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에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즉 사회적 부양방안에 관한 탐색 및 대안 모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의 진전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특히 연금과 의료에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선진국에서는 법정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자

1) 본 원고는 아직 미완성 원고이므로 절대 인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발적인 은퇴연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은퇴에 따른 연금 지급을 연장하고 있다(김병숙, 2003). 한국에서도 개인의 은퇴를 늦추고, 노인인구를 생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령자들의 은퇴시기 및 은퇴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정책적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

현재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건강상태,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특성 및 가구특성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분석한 미시적 연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률 및 공적연금의 확대와 같은 국가 경제 및 제도적 차원의 영향을 살펴본 거시적 연구로 구분된다(권승, 황규선 2004). 거시적 연구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은퇴 의사결정에 미치는 사회구조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요 관심이 있는 반면에 개인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일한 사회구조적 영향에 노출된 개인의 다양한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 이런 점에서 미시적 연구는 비록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개인의 다양한 요인들이 은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데 장점을 갖는다.

개인의 은퇴 결정은 본인의 인적자본, 건강상태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적 요인, 특히 배우자와 동반 은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맞벌이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사회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짐에 따라 은퇴 결정을 함에 있어도 배우자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최승현, 2006).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에 대한 서구 선진국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은 배우자의 삶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의사결정이나 선택의 패턴이 상호 독립적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은퇴결정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의견과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Army, 2003; Coile, 2004; O'Rand & Henretta, 1983).

이처럼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소수의 연구에서 은퇴자 개인 특성 중 몇몇 배우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그 영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는,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은퇴유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 것이 유일하나, 연구대상을 맞벌이 가구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은퇴결정기대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결과를 추정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비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할 것이며, 배우자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의 은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우자의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 즉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퇴 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히는

경험적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정책 수립에 있어 가구 단위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연구검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고령자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거시적 연구들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공적연금의 확대 등과 같은 국가 경제 및 제도적인 차원이 개인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반면, 미시적 연구들은 개인의 학력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미시적 특성이 은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권승, 황규선, 2004; 이철희, 2003; Costa, 1995; Gruber & Wise, 1999; Ippolito, 1990; Bound, Schoenbaum & Waidmann, 1995). 특히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은퇴 시까지 근무하는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미시적 연구들에서 은퇴결정에 있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승현(2006)은 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한 가구 내에서 부부 간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는 상당한 편익과 저평가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은퇴결정에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특히 배우자의 영향이 어떠한지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주로 미시적 연구, 특히 배우자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동반은퇴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에서는 이미 동반은퇴(Joint retire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Gustman & Steinmeier(2000)는 미국 맞벌이부부의 은퇴시기와 그 양상을 살펴 본 연구를 통해 은퇴결정이 배우자 간에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는 동반은퇴의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은퇴시기가 상호의존적으로 결정되는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동반은퇴 양상에 '여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이후에 배우자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것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자신의 퇴직결정 시 배우자의 퇴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stman & Steinmeier, 2004). 여성의 경우,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치를 크게 두는 경우에만, 남편의 은퇴가 자신의 은퇴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은퇴하였다면 자신도 은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자와 여가를 보내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은퇴를 고려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영향이 거의 두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ile(2004)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간의 동반은퇴가 흔하게(common) 나타나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현상(universal phenomenon)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부

부의 은퇴시기에 대한 자료 분석에 근거하는데, 일 년 내에 부부가 함께 은퇴한 경우는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이 먼저 은퇴한 경우가 31%, 남편이 먼저 은퇴한 경우가 54%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동반은퇴의 양상은 다양한 은퇴패턴 중 일부를 설명할 뿐이며, 부부의 은퇴결정은 배우자 간 상호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Coile는 사회보장급여나 사적연금과 같은 은퇴유인이 배우자 각각의 은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은퇴유인이 배우자 서로에게 미치는 일출효과(spill-over effect)²⁾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동일하게 자신의 사회보장급여나 사적연금과 같은 은퇴유인이 증가하면 은퇴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단순히 남편의 은퇴여부에 따라 은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퇴관련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은퇴결정을 내리고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은퇴유인은 남성의 은퇴결정에 중요한 일출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남편으로부터의 일출효과가 부인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의 경우 여가의 대체효과가 남성의 비해 약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여가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보낼 때 즐겁고 대체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Pienta(2003)의 연구에서는 은퇴결정에 있어 부부 상호 간의 영향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맥락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사 일을 양립해야 하므로 가족의 간섭이 적고 많음에 따라 노동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았고, 남성보다 배우자 및 가족적 요인들에 의해 은퇴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이 사무직에 종사할 경우에 여성이 은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양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은퇴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에 배우자 간 나이차, 교육수준 차, 부양 자녀 수, 결혼기간 및 순 자산과 같은 가족관련 요인이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동반은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은퇴결정요인으로 배우자의 영향 및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김지경(2005)은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은퇴사유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건강의 문제로 인해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성은 정년은퇴, 권고사직이나 명예은퇴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원 돌보기와 가계의 여유 및 여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여성의 경우 은퇴결정 시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Pienta(2003)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고는 있으나,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2) 한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이나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현상을 일출효과(spillover)라고 함. 일출은 물 같은 액체가 흘러넘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출효과를 비대칭적인 여가의 대체효과로 설명하였음.

권승과 황규선의 연구(2004)은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독립변수 중의 하나로 '가족구조'를 설정하였는데, 부부끼리만 사는 1세대를 기준변수로 삼아 2세대, 3세대 및 독거로 구분한 가족구조에 따른 은퇴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부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2세대 가구의 경우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에 비해 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았고,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에는 독거인 경우에 비해 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에 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가족구조와 개인의 은퇴여부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밝혔다.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밝힌 최승현(200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은퇴유인(공적연금기대자산, 비임금소득액,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시간당 임금액 등)이 본인의 은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와 그 반대로 본인의 은퇴유인에 의한 배우자의 은퇴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은퇴유인이 자신의 은퇴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Gustman & Steinmeier(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를 남성과 여성의 여가가 보완재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남성은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완관계에 있는 반면, 여성은 약한 보완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위에 언급한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의 상호의존적 패턴이나 동반은퇴의 양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최승현(2006)의 것이 유일하나, 분석대상이 맞벌이 부부에 한정되어 있고 예측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뿐 만 아니라 부부 중 한 명 만 노동시장경력이 있는 비 맞벌이 가구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학력, 건강상태, 종사상 지위, 월평균 임금액, 자녀수와 같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켜 이러한 부부의 특성들이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은퇴결정에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배우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6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개인공통자료, 가구자료와 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개인공통자료는 개인의 성별, 나이, 학력, 거주 지역, 혼인상태는 물론 경제활동상태, 소득활

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상의 특성 및 지위,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관련 사항, 노동시장 이동 사항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중·고령자부가조사 자료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후 대책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만 50세 이상 모든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03년에 은퇴여부, 은퇴연령, 은퇴이유는 물론 은퇴 후 재취업여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 고령자들의 소득원과 관련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 및 비은퇴자 그리고 배우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공통 변수, 가구특성 변수와 중·고령자 부가조사 변수를 취합하기 위해 6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2003년 현재 만 50-59세이고 기혼유배우자인 개인으로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352커플로 총 704명이 선정되었다.

2. 변수에 대한 개념 및 정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은퇴여부로서 은퇴 한 경우와 은퇴 하지 않은 경우 및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의 3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들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남성의 경우 과거취업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자가 2 케이스에 불과하여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은퇴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은퇴 한 경우, 은퇴하지 않은 경우 및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로 3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은퇴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배우자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한 독립변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요인, 노동시장요인과 가족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요인에는 성별, 은퇴당시의 연령, 건강상태와 학력이 포함되었고, 노동시장요인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요인에는 미성년자녀 유무를 투입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① 성별

노동패널 자료에서 성별변수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남자를 기준집단으로 하여 가변수(dummy coding)화 하였다.

② 연령

연령변수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나이는 2003년 조사당시의 만 나이를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배우자는 은퇴당시의 만 나이를 사용하였다.

③ 학력

노동패널 자료에서 학력변수는 미취학, 무학,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중학교 졸업이하(1), 고등학교 졸업(2), 전문/일반대학졸업(3), 대학원 졸업 이상(4)으로 다시 범주화하였다. 기준변수는 중학교 졸업이하(1)이다.

④ 건강상태

노동패널 자료에서 아주 건강함,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아주 건강하지 않음의 서열 변수로 되어 있어 이를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은퇴여부에 따라 비은퇴자와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와 배우자는 2003년 조사당시의 건강상태를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배우자는 은퇴전의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은퇴전 건강상태가 결측인 경우는 2003년(6차년도)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2) 노동시장 요인

① 종사상지위

노동패널 자료에서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변수를 사용하여 종사상지위를 상용직(1), 임시/일용직(2), 자영업(3), 미취업자(4)로 재범주화하였고 기준변수는 상용직(1)이다.

은퇴여부에 따라 비은퇴자와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와 배우자는 2003년 조사당시의 종사상지위를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배우자는 은퇴전의 종사상지위를 사용하였다.

② 월평균 임금

노동패널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월평균 임금을 측정하였는데 재범주화한 종사상지위변수를 이용하여 종사상지위가 상용직, 임시/일용직인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자영업자인 경우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였고, 미취업자의 경우는 0으로 설정하였다.

은퇴여부에 따라 비은퇴자,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 및 그의 배우자는 2003년 조사당시의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그의 배우자는 은퇴 전의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였다.

3) 가족 요인

①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

노동패널 자녀의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기준변수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표 1> 독립변수 속성 및 측정수준

항목	변수 명	변수속성	측정수준
인구사회학 적요인	성별	1. 남, 2. 여	비연속
	연령	만50세 이상 59세 이하	연속
	학력	1. 중학교 졸업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일반대학 졸업 4. 대학원 졸업 이상	비연속
	건강상태	은퇴전 건강상태(은퇴 전 건강상태가 결측인 경우 6차년도 값 사용)	연속
노동시장 요인	종사상지위	은퇴전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일용직 3. 자영업 4. 미취업	비연속
	임금수준	은퇴전 월평균임금액	연속
가족요인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	1. 유, 2. 무	비연속

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연구대상을 성별로 구분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모형 I은 전체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은퇴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남성의 경우 종속변수를 은퇴를 한 경우와 은퇴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은퇴 여부에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경

우까지 포함하였기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 분석모형 I >

은퇴여부 = a1 + b1*성별 + b2*본인연령 + b3*본인학력 + b4*본인은퇴시건강상태 + b5*본인은퇴시종사상지위 + b6*본인은퇴시월평균임금액 + b7*은퇴시배우자연령 + b8*은퇴시배우자학력 + b9*은퇴시배우자건강상태 + b10*은퇴시배우자종사상지위 + b11*은퇴시배우자월평균임금액 + b12*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

< 분석모형 II >

남성의 은퇴여부 = a1 + b1*남성은퇴연령 + b2*은퇴시배우자연령 + b3*남성학력 + b4*은퇴시배우자학력 + b5*남성은퇴시건강상태 + b6*은퇴시배우자건강상태 + b7*남성은퇴시종사상지위 + b8*은퇴시배우자종사상지위 + b9*남성은퇴시월평균임금액 + b10*은퇴시배우자월평균임금액 + b11*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

< 분석모형 III >

여성의 은퇴여부 = a1 + b1*여성은퇴연령 + b2*은퇴시배우자연령 + b3*여성학력 + b4*은퇴시배우자학력 + b5*여성은퇴시건강상태 + b6*은퇴시배우자건강상태 + b7*여성은퇴시종사상지위 + b8*은퇴시배우자종사상지위 + b9*여성은퇴시월평균임금액 + b10*은퇴시배우자월평균임금액 + b11*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가. 은퇴여부

성별에 따른 은퇴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704명 중 은퇴자는 146명, 비은퇴자는 456명, 과거에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102명이었다. 남성 은퇴자는 모두 가구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명이 가구주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배우자였다. 전체 은퇴자 146명 중 남성이 60명으로 41.1%를 차지하고, 여성이 86명으로 58.9%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퇴자의 경우는 남성이 288명으로 63.2%를 차지하고, 여성이 168명으로 36.8%를 차지하였다. 또한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102명 중 여성이 100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

다수(98%)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구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은퇴여부

은퇴 여부 구분	은퇴 또는 은퇴 후 소일거리		은퇴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취업경험없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구주	60(100)	2(2)	288(99)	0(0)	2(100)	0(0)
배우자	0(0)	84(98)	2(1)	168(100)	0(0)	100(100)
합계	60(100)	86(100)	290(100)	168(100)	2(100)	100(100)

나. 은퇴여부에 따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은퇴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3>와 같다.

먼저 성별구성을 보면, 은퇴자의 경우 남성이 41.1%, 여성이 58.9%이었으며, 비은퇴자의 경우는 남성이 63.2%, 여성이 3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여성이 98%를 차지하여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하가 31.5%, 전문/일반대학이 15.8%, 대학원 이상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퇴자의 학력 역시 은퇴자의 것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졸이하가 가장 많아 50.9%,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하 32.9%, 전문/일반대학교 12.9%, 대학원 이상이 3.3%를 차지하였다.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도 중졸이하가 55.9%, 고등학교 이하가 31.4%, 전문/일반대학은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은퇴자의 경우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9%인데, 비은퇴자의 경우는 1.3%,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1%에 불과하였다.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은퇴자의 경우 20.5%, 비은퇴자 16.4%,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가 22.5%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31.7%, 비은퇴자 36.8%,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46.1%가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은퇴자의 경우 31%, 비은퇴자의 44.3%,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28.4%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주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은퇴자는 전체 8.3%이며, 비은퇴자의 경우는 1.1%,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전체 은퇴자 중 11%가 은퇴 이전에 상용직에 종사하였으며, 2.8%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은퇴 이전에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28.3%이며 미취업자는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퇴자의 경우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36.2%이며, 임시/일용직 12.9%, 자영업의 경우는 34.2%으로 나타났고, 미취업자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는 16.7%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를 보면, 고등학생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은퇴자는 4.1%, 없는 은퇴자는 95.9%이며, 고등학생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은퇴자는 5.5%, 없다고 응답한 비은퇴자는 94.5%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4.9%가 고등학생 자녀가 있

다고 응답하였고, 95.1%가 고등학생이하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 연령 및 월평균임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에 나타나있다. 먼저 은퇴자 146명에 대한 은퇴당시 평균 연령은 47.51세로 나타났으며, 비은퇴자의 평균연령은 54.48세,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는 53.31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자의 월평균임금액은 평균 약 36만 원이며, 비은퇴자의 경우는 약 139만원이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은퇴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변수	구분	은퇴자	비은퇴자	과거 취업경험 없는 자
성별	남성	60(41.1)	288(63.2)	2(2)
	여성	86(58.9)	168(36.8)	100(98)
학력	중졸이하	74(50.7)	232(50.9)	57(55.9)
	고등학교	46(31.5)	150(32.9)	32(31.4)
	전문/일반대학	23(15.8)	59(12.9)	13(12.7)
	대학원이상	3(2.1)	15(3.3)	0(0)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음	13(9.0)	6(1.3)	1(1)
	건강하지 않음	30(20.5)	75(16.4)	23(22.5)
	보통임	46(31.7)	168(36.8)	47(46.1)
	건강함	45(31.0)	202(44.3)	29(28.4)
	아주 건강함	12(8.3)	5(1.1)	2(2)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11.0)	165(36.2)	0(0)
	임시/일용직	4(2.8)	59(12.9)	0(0)
	자영업	41(28.3)	156(34.2)	0(0)
	미취업	84(57.9)	76(16.7)	102(100)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	유	6(4.1)	25(5.5)	5(4.9)
	무	140(95.9)	431(94.5)	97(95.1)

<표 4> 연령 및 월평균임금액 일반적 특성

변수	은퇴자			비은퇴자			과거 취업경험 없는 자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령	146	47.51	9.04	456	54.48	2.59	102	53.31	2.30
월평균임금(만원)	111	36.27	77.90	449	138.76	158.72	102	0	0

2.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 : 로짓분석

<표 5>는 가구주의 은퇴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로짓은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대비해 은퇴

했다는 응답의 로그오즈(log-odds)이다.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 χ^2 값이 142.96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ox와 Snell의 R^2 값은 .377로 나타나 가구주의 은퇴결정 여부에 본인 및 배우자 변수들에 의해 37.7%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월평균 임금이 있으며, 본인 종사상지위 및 본인 월평균임금이 있다. 그러나 성별, 본인연령, 본인 학력, 본인 건강상태, 배우자 종사상지위,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인의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인 경우 상용직에 비해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13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dds=.13, $p<.05$), 본인의 월평균임금의 경우 부(-)의 관계를 보여 월평균임금액이 많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3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327, $p<.05$).

다음으로 배우자 요인을 살펴보면, 배우자 연령의 경우 부의 관계로 배우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5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532, $p<.01$). 또한 배우자 학력은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정의 관계를 보여 중졸이하보다 가구주가 은퇴할 가능성이 21.2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21.273, $p<.05$). 그러나 배우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이상을 졸업한 경우는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건강상태는 정의관계로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주가 은퇴할 가능성이 3.25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3.258, $p<.01$).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의 경우 부의 관계로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95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958, $p<.05$).

<표 5> 가구주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변수	β	Wald χ^2	Exp(β)
상수	30.196	16.185***	26699737876771.430
본인 성별(기준:남성)			
여성	26.087		213449368240.229
본인 연령	-.080	.442	.923
본인 학력(기준:중졸이하)			
고등학교	-.297	.162	.743
전문/일반대학	-1.415	1.337	.243
대학원 이상	-1.131	.434	.323
본인 종사상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207	.051	.813
자영업	-2.038	6.102**	.130
미취업	-3.486	1.776	.031
본인 건강상태	-.082	.075	.921
본인 월평균 임금	-1.119	5.013**	.327
배우자 연령	-.532	9.055***	.587
배우자 학력(기준:중졸이하)			
고등학교	1.250	2.529	3.489
전문/일반대학	3.057	5.240**	21.273
대학원 이상	29.697	.000	7894089894145.420
배우자 건강상태	1.181	9.592***	3.258
배우자 종사상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1.409	.883	.244
자영업	-.213	.060	.809
미취업	-1.037	1.223	.355
배우자 월평균 임금	-.015	4.054**	.985
고등학교 이하 자녀유무(기준:유)			
무	1.937	1.035	6.938
N		302	
-2Log Likelihood		118.172	
$\chi^2(df)$		142.968(20)***	
Cox와 Snell의 R^2		.377	

*p<.1, **p<.05 ***p<.01

다음 <표6>은 남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 χ^2 값이 139.61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ox와 Snell의 R^2 값은 .369로 나타나 남성의 은퇴결정 여부에 본인 종사상지위, 본인 월평균임금과 배우자 연령, 배우자 건강상태, 배우자 월평균임금 변수들에 의해 37.7%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본인 월평균임금의 경우 부의 관계를 보여 월평균임금액이 많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3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328, p<.05). 본인 종사상지위의 경우 자영업이 상용직보다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80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809, p<.05).

다음으로 배우자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배우자 연령은 부의 관계로 남성의 경우 배우

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58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585, p<.01). 배우자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남성이 은퇴할 가능성이 21.69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odds=.21.69, p<.05). 또한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할 가능성이 3.3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3.307, p<.01).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은 부의 관계를 보여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액이 많을수록 남성이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98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985, p<.05).

<표 6> 남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변수	β	Wald χ^2	Exp(β)
상수	30.941	16.162***	27371413366698.490
본인 연령	-.079	.427	.924
본인 학력(기준:중졸이하)			
고등학교	-.328	.201	.720
전문/일반대학	-1.439	1.386	.237
대학원 이상	-1.155	.453	.315
본인 건강상태	-.080	.071	.923
본인 월평균 임금	-1.115	4.968**	.328
본인 종사상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268	.086	.765
자영업	-2.039	6.080**	.130
미취업	-3.456	1.744	.032
배우자 연령	-.535	9.170***	.585
배우자 학력(기준:중졸이하)			
고등학교	1.264	2.613	3.541
전문/일반대학	3.077	5.314**	21.690
대학원 이상	29.729	.000	8151745986842.280
배우자 건강상태	1.196	9.807***	3.307
배우자 종사상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1.358	.819	.257
자영업	-.212	.060	.809
미취업	-1.047	1.245	.351
배우자 월평균 임금	-.015	4.106**	.985
고등학교 이하 자녀유무(기준:유)			
무	1.934	1.029	6.918
N		303	
-2Log Likelihood		118.447	
$\chi^2(df)$		139.615(19)***	
Cox와 Snell의 R^2		.369	

*p<.1, **p<.05 ***p<.01

<표 7>은 여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은퇴여부는 물론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 χ^2 값이 282.31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선 은퇴자와 비은퇴자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에 비해 자영업인 경우가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109.89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109.892, $p<.01$). 그 외에 변수는 여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자와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를 비교해보면, 배우자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여성이 과거에 취업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2.755배 (odds=2.755, $p<.05$), 배우자가 중졸이하를 졸업한 경우보다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여성이 과거 취업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8.322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dds=8.322, $p<.01$).

이상 성별에 따른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의 경우 은퇴결정에 있어 본인 종사상지위, 본인 월평균임금과 배우자 연령, 배우자 건강상태, 배우자 월평균임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여성의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종사상지위와 배우자 학력 변수를 제외한 본인변수는 물론 배우자와 관련된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최승현(2005)의 연구에서 부부의 은퇴결정이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배우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배우자 요인이 없었다는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여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기준:은퇴자)

변수	비은퇴자			과거 취업경험 무		
	β	Wald χ^2	Exp(β)	β	Wald χ^2	Exp(β)
상수	16.059	.000		-1.486	.121	
본인 연령	-.031	.067	.970	.086	.916	1.090
본인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등학교	-.401	.484	.670	-.764	2.233	.466
전문/일반대학	-1.184	.891	.306	-1.190	2.011	.304
대학원 이상	12.836	.000	375314.47 8	14.168	.000	1422102.00 5
본인 건강상태	.083	.015	1.033	.169	.598	1.184
본인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303	.000	.739	-.348	.000	.706
자영업	-16.099	.000	1.02e-007	-15.531	.000	1.80e-007
미취업	-20.206	.001	1.68e-009	-.066		.936
본인 월평균 임금	.002	.094	1.002	-.001	.000	.999
배우자 연령	.075	.479	1.078	-.021	.064	.979
배우자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등학교	.390	.529	1.477	1.013	4.663**	2.755
전문/일반대학	.096	.010	1.100	2.119	9.413**	8.322
대학원 이상	1.248	.690	3.483	1.487	2.115	4.425
배우자 건강상태	-.105	.125	.900	-.194	.605	.824
배우자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1.294	1.197	3.646	-.264	.200	.761
자영업	4.699	26.394* **	109.892	.603	1.705	1.828
미취업	.339	.022	1.403	-2.697	1.758	.067
배우자 월평균 임금	-.247	.380	.781	-.343	.843	.710
고등학교 이하 자녀유무(기준:무)						
유	-1.068	.596	.344	-.050	.004	.952
N	312					
-2Log Likelihood	353.617					
$\chi^2(df)$	282.312(38)***					
Cox와 Snell의 R^2	.595					

*p<.1, **p<.05 ***p<.01

IV. 결론

본 연구는 제6차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은퇴결정에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와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종사상지위 및 임금수준의 노동시장요인, 고등학생 이하 자녀유무가 포함된 가족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의 은퇴여부에는 본인의 노동시장요인인 종사상지위와 월평균임금이 은퇴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용직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은퇴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요인은 경제적인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은퇴를 결정함에 있어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주요하게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월평균 임금의 노동시장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졸이하보다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일수록 가구주의 은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본인의 은퇴가능성이 커진다는 결과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에 동반은퇴를 고려한다는 선행연구 결과(Gustman & Steinmeier, 2004)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은퇴 이후에 함께 여가를 보내기 위해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은퇴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성별에 따라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인이 상용직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월평균 임금액이 많아질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배우자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종사상의 지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것에 비해 자영업인 경우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lie(2004)나 최승현(2006)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본인의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특성(경제적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하였을 때 본인의 과거취업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학력변수가 여성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은퇴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통계청. 2007. “장래인구 추계자료”, <http://www.nso.go.kr>.
- 김병숙. 2003. 『우리나라 정년제의 도입배경 및 실시현황』.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 19: 285-312.
- 권승 & 황규선. 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 이철희. 2002. 『한국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1995~2000』.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정책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 장지연·호정화. 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1-21.
- 최승현. 2006. 『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9권 (1):129-152.
- Amy M. P. 2003. “Partners in Marriage : An Analysis of Husbands’ and Wives’ Retiremen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2: 340-358.
- Coile C. 2004. "Retirement Incentives and Couples' retirement Decisions".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 Deborah B. S and Phyllis M. 1998. "Spousal Influence on retirement: His, Her, and Their Percep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734-744.
- Gruber J. and D. Wise. 1999.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lan L. G. and Thomas L. S. 2000. "Retirement in Dual-Career Families: A Structural Mode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3).
- Alan L. G. and Thomas L. S. 2004. "Social Security, Pensions and Retirement Behavior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9:723-737.
- Ippolito, R. 1990. "Toward Explaining Earlier Retirement After 1970".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3(1), 103-123.